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13대 입법과제와 4대 정책과제 제안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 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

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차례

<개혁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6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8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10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12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13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14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16
입법과제8.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17
입법과제9.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19
입법과제10.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1
입법과제11.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22
입법과제12.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등 개정	23
입법과제13. 감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24

<정책 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25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27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29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31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이 정부의 방해로 실제로는 2015년 8월 경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유가족과 시민사회, 세월호특조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2016년 9월 강제로 종료시켰음.
-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국정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가로 막은 것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음. 강제로 해산당한 세월호특조위를 다시 구성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활동은 계속해야 할 것임. 또한 2017년 1월 현재까지 인양되고 있지 않은 세월호 선체도 인양되어야 함.
- 2016년 11월 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가 1,092명 피해자는 5,226명에 달함.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그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 또한 기업 책임자 일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 그러나 관리 감독을 맡은 정부와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 따라야 함.
- 박근혜 정권에 의해 사실상 폐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되,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 2016년 12월 19일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박주민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하였음(의안번호 : 2004473)

2) 입법과제

- 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9명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함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야의 정쟁으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경과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02-725-7105)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피의자가 되는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가 있었음.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인됨.
- 더욱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황제소환에서 드러났듯 검찰에게 현직에 있는 권력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인됨.
-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야 3당은 지난 해 7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1461)」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001057)」,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2004379)」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새누리당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 둔 것일 뿐만, 상설화 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특별감찰관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한계가 명확함.
- 참여연대는 2010년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2013년에는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서기호 의원을 통해 발의한 바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함.

2) 입법과제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운영
- 형법상 뇌물죄, 공무원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 등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 특정
- 수사처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수사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인사청문회를 거치함.
- 예산 편성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여 독립성을 확보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정치적 의견 개진, 정책 호소 등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함. 또한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18세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는 절대 과반이 아닌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의 지지를 받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함. 단 한 번의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는 제도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 간 긍정적인 경쟁보다 당선을 위한 후보 단일화 논쟁을 반복해야 하는 실정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20대 개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청원(청원번호 : 2000019)한 바 있음.

2) 입법과제

①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함.
-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②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알 권리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 현행 선거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1항,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함.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20일 전부터인 현

행 후보자 등록일을 앞당겨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함.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함.
-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근거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함.
-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한정함.
- 영장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③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시행해 대통령 당선인을 정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 기관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제11조),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교통불편'을 이유로 쉽게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
- 위 집시법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청와대 인근 집회, 조기탄핵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인근의 촛불집회와 행진도 지속적으로 금지시켰음. 집회 개최에 임박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통해 겨우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청와대나 헌법재판소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시위행진 모두 금지되는 상황임.
- 집회 “장소”를 집회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임. 이는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 ‘허용’할 사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약하는 집시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하는 법률안을 입법청원(청원번호 : 2000035)하였고, 박주민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3421)을 발의하여 상정되어 있음.

2) 입법과제

①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 개정(제11조)

- 인근에서의 집회가 제한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고, 대상기관 인근에서라도 모든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도록 제11조를 개정

② 경찰이 교통불편 이유로 집회시위 원천적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 개정(제12조)

-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통고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삭제하는 등 집시법 제12조를 개정

3) 소관 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은 총수일가와, 지배주주,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미한 현실의 결과임.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법제도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소액주주의 독립적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은 시민사회와 야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음. 2013.7.17.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까지만 하고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지금까지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윤추구를 차단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비이기도 함.

2) 입법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제도 도입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 국회의 주요한 행정부 통제 수단은 예산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조사, 인사청문회 등이 대표적임. 그러나 여전히 제도 미비와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매년 졸속·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최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국정조사청문회에서도 다수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위증하는 등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능을 무시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음.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수적임.
- 법률의 하위 규범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범위나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사례를 통제할 수 있는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20대 국회에는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0683)과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3624)이 계류되어 있음.

2) 입법과제

① 증인 불출석과 위증, 행정부의 자료제출 미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타당한 불출석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사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차단하고, 증인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함.
- 국정조사 관련한 수사 및 금융자료 열람 특례를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행정부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으로 주무부장관의 해임요구권을 추가하고, 국회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경과를 사후 보고하도록 함. 또한, 행정부의 징계가 미비할 경우 국회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 위의 시행령'으로 불리는 사례에 대해 국회의 거부 권한과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다양하게 해야 함.
- 입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령, 총리령 등에 대해,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칠 것인지,

수정 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단순 제출절차만 적용할 것인지 등 등급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③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 예산결산특위가 예산안 심의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 하도록 하는 국회법 제85조의3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함.
-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함. 예산결산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매 회기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함.

④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실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 상임위 의결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 폐지

-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들을 것을 규정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검토보고 제도가 국회의 입법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함.

⑥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 현행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필수적 절차로 두어, 입법 비효율이 생기고 이를 이유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의 내용까지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국회 법제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드러난 '최순실 예산'의 존재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 사용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사례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시민사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의안번호 : 2002287)을 발의하였음.

2) 입법과제

①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 소송절차를 규정한 「국민소송법」 제정

- 국가의 재무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함.
-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고적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함.
- 위법한 재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
-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입법과제8.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1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슴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초래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할 만한 법제도가 사실상 없음.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 중에서도 피해자가 입증가능한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자 구제에도 미흡하고, 배상액의 규모가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에도 훨씬 못 미쳐 불법행위를 억제할 유인책이 되지도 못함. 이 때문에 제품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법을 도입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비등한 것임.
-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충분한 피해구제와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등이 발의한 「징벌적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003400),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발의한 「징벌적배상법안」(의안번호 : 2000283)이 각 발의되어 있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3배~10배의 징벌적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제조물책임법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음. 그러나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야말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억지 및 예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8월 20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청원번호 : 2000013)을 입법청원함. 국민의 신체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기업 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하자는 논리에 다름 아님. 오히려 정직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보장임을 감안한다면 징벌적 배상법 도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입법과제

① 법적 상한 없는 진정한 의미의 징벌적배상법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의 3배, 10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재산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한국 손해배상제도에서는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배상액 자체도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해 3배, 10배 등 배수배상제로는 가슴기참사와 같이 생명과 신체에 대해 의도적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제재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상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산규모, 불법행위의 사회적 비난 정도, 매출액 등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003400)이 이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관련위원회 :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입법과제9.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등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1천 명이 넘고 2,3차 피해자들도 그 규모가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01년 이후 매년 60만 개 이상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었다고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된 사망자 및 그 피해자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이에 따라 불법행위의 가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에 한해 배상을 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얻게 되는 영업이익을 포기할 동기를 갖지 못함.
-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용품 뿐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 교통, 정보통신, 노동 등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도 광범위함. 그러나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광범위한 소액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절차, 소송비용 문제나 입증의 부담 등 때문에 제대로 구제받기가 쉽지 않고, 동일한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만한 제도도 없음.
- 이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침해된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향후 동일한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 억지하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 법을 도입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 2001183) 이 상정되어 있음.

2) 입법과제

- ① 소비자, 환경,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대량 피해의 원활한 구제 및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
 - 집단소송법은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현행의 민사소송절차로는 복잡하고 피해구제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것

입.

- 증권 분야와 같이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소비자분야, 노동, 환경 등 모든분야에 적용하고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입법과제10.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20%를 초과하면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RIR은 27%, 저소득층 평균 RIR은 34%(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 하지만 현재 정부는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정책이 아닌 부동산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 부추긴 결과 국민들의 가계부채 폭증,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4662)를 작년 12월 발의하였음.

2) 입법과제

①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법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②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또는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 지자체별로 주택의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입법과제11.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남.
-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함.
- 우원식 의원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6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 2000077)을 발의한 바 있음.

2) 입법과제

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확대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경제주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룸
- 중소기업청장은 관련 사업 분야 등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② 대기업이 중소기업인 사업영역에 진출 시 사업 이양 명령

-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입법과제12.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기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 최고세율은 일본 34.62%, 미국 35.1%, 독일 39.2%, 프랑스 34.4%인데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3%)보다도 낮음. 또한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의미하는 '총조세부담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33.2%로 OECD 평균에(41.3%) 비해 8.1%나 낮은 수치임.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으로 높지만,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가장 높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이지, 실질적인 법인세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음.
-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법정세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현재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계류중임.

2) 입법과제

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라는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라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수정함.
- 현행 3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10%, 20%, 22%의 법인세율을 10%, 22%, 25%, 27%의 법인세율로 수정함.

②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지원이 필요한 100억 원 이하 부분과 중소기업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인 법인에 대하여 12%,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7%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 20%로 상향 조정함.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입법과제1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음.
-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음. 박근혜 정부에서도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고, 이 가운데 9명이 검사로 재임용, 이 중 3명이 주요 부서로 복귀하였음.
- 관련하여 20대 국회에는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1801)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3817)이 상정되어 있음.

2) 입법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1) 취지

-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온 것이 확인되고 있음.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사찰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의 원리,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임.
-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작정치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2) 국정조사 내용

① 언론 통제와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 KBS 이사회 사장 임명 개입,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사저널/일요신문, 세계일보 정윤희 문건 등 보도한 세계일보 등 언론통제에 대한 진상규명

②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진상규명

- 홍성담 화백에 대한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화제 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등에 대한 진상규명

③ 사법부 사찰 의혹 및 통제에 대한 진상규명

- 검사 출신의 대법관 임명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 사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해산 재판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

④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사찰 통제에 대한 진상규명

-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 작성, 경찰과 팀을 짜서,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 사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찰 등에 대한 진상규명

3) 주요 증인

- 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 ②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관계자
- ③ 국정원 제3차장, 추 모 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
- ④ 성명 불상의 직권남용에 가담한 공직자들

4) 소관 상임위 :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3)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1) 현황과 문제점

-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은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7월 13일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의 부지로 발표함.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환경영향평가도, 국회 심의도,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도 없이 9월 30일 결국 롯데 성주CC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 변경 발표함.
- 이에 더해 11월 23일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함. 중국을 봉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과 일본의 재무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회 권한을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서명함.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은 기정사실화되었으며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와 동북아 군비경쟁은 격화되고 있음.
-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러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은 롯데그룹의 정권에 대한 '또 다른 뇌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호텔롯데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이 그것임. 이와 관련해 사드 배치 부지용 토지 취득 관련 롯데가 현금 보상이 아닌 국방부가 요구한 교환 방식안을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수용한 배경도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외교참사로 손꼽히고 있는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체결은 정당성 문제를 비롯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함.

2) 정책과제

①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재검토 및 철회

- 미국 주도의 MD 참여 문제, 그에 따른 동북아 내 갈등 심화 문제, 사드의 효용성 문제, X-밴드 레이더의 유해성, L-SAM 개발과의 상충 문제, 주한미군 기지 내 배치할 경우 비용 분담 문제,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 절차적 문제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함.
- 이를 위해 국회는 우선 1월 예정된 국방부와 롯데그룹 간의 사드 배치 부지 계

약체결을 중단시켜야 함. 그리고 지난 8월 3일 야3당이 합의한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해 위의 문제점들을 포함 한국 배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철회토록 해야 함.

② 국민 속이며 강행한 위헌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음. 이번 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법부의 동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속전속결로 추진된 명백한 위헌적 협정임.
- 게다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 자위대와 더 밀접한 군사 협력을 맺기 위한 조치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함. 90일 전에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협정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협정 체결을 전면 무효화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1)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 사항을 발표함. 그러나 그 내용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일본 정부의 공식적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 없는 정부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음.
- 지난 1년간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사회적 비판은 외면한 채 화해치유재단 설립강행,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등재 지원중단, 교과서 기록 축소 등 굴욕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만 몰두해왔음. 일본은 12.28 굴욕합의를 빌미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세계 각지의 평화비 건립을 가로막고 있으며, 적 반하장식의 소녀상 철거 압박을 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단호한 대처는커녕 침묵하고 있음.
- 또한, 한일 합의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주무 장관의 추가 협상 요구를 무시하고 한일 합의 체결을 강행했다는 의혹, 소녀상 이전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2) 정책과제

① 굴욕적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 및 화해치유재단 해체

- 국회 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무효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
- 무효 선언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굴욕적인 한일합의 폐기 및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촉구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진상조사

- 최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한일 합의의 협상문서 공개를 추구하고 굴욕적인 합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합의 주도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 국회의원 전원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1)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및 시위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규정을 위반하여 물대포(살수차)를 직사함으로써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 2016년 9월 25일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함.
- 이와 관련해 2015년 11월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 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그 직후 참여연대 또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1만 8백여 명의 긴급서명을 검찰에 제출하였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2016년 9월 2일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1년 3개월째에 접어든 현재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해(2016년)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경찰청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와 은폐, 협조거부 등으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음
-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원내대표 3명이 발의하고, 3개 당 소속 의원 163명이 찬성하여, 국회에는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의안번호 2002577)」이 발의되었음
- 그러나 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저 발의된 지 100여 일째를 맞고 있는 2017년 1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전혀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

2) 정책(과제)

- 국회에서 1월 또는 2월중에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의안번호 2002577)」을 의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시민감시2팀 (02-723-0666) [참](#)

참여연대 정책자료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_ 13대 입법과제와 4대 정책과제 제안

발행일 2017. 01. 11.

발행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담 당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